

서울특별시보

등록번호	제 39호
등록년월일	1953년 6월 18일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편집인	공보실장 최필호
인쇄	국제출판인쇄주식회사

차례

△조례	2
제 472호 서울특별시 전화 개발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제 473호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증 개정조례	
△규칙	5
제 631호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증 개정규칙	
제 632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수가조례 시행규칙증 개정규칙	
제 633호 서울특별시 기구개편 심의회 규칙	
제 634호 서울특별시 적체증 개정규칙	
제 636호 서울특별시 경찰관파출소와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의 전증 개정규칙	
제 637호 서울특별시 고용원 규정증 개정규칙	
제 638호 서울특별시립 운동장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사정	22
△고시	32
제 19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94호증 일부개정	
제 20호 도로구역 고시	
제 21호 사묘성분증·록 변경신청	
제 22호 사방지정기 해제	
△광고	36
제 51호 브지세목 광고	
제 52호 환자예정기 일부변경	

(2) 조례

- 제53호 부정 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처분
제54호 세목공고
제55호 환자처분 일부변경
제56호 1967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
제57호 시유건물 초기조간부 매각처분
제58호 세목공고
제59호 법상판정 등 법상명령서 공시송달
제60호 채비지 매각·공고
제61호 세복공고
제62호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실시
제63호 중앙시민 종합시장 및 중앙아파트 전립
및 운영 척도자 모집
제64호 환자예정지 일부변경 지정

△예 규 59

- 제148호 제조사 청탁에 대한 결정권등의 내부위임

조례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制定한 서울特別市 電化開發基金設置 및 管理條例
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4月 4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72號

서울特別市電化開發基金設置 및 管理條例

第1條(目的) 이 條例는 市民生活의 向上과 都市의 均衡的 發展을 圖謀하고
자 서울特別市 未電化地域에 電氣를 供給하기 為한 電化開發基金(以下 基
金이라 한다)을 設置하고 이를 圓滑히 管理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基金設置 및 使序) ①電化事業에 所要되는 基金은 서울特別市費(以

下市費基金이라 한다)로設置한다

②市費基金은 未電化地域의 電化事業을 目的한 以外에는 이를 使用할 수 없다

第3條(工事費의 負擔) 電氣施設에 所要되는 工事費의 負擔은 다음 각號에 依한다

1. 配電施設工事費는 電氣事業者の 自己負擔金額과 市費基金으로 充當한다. 다만 需用者の 自己負擔能力이 있을 때에는 그 金額을 超過하는 費金을 市費基金으로 充當한다.

2. 内線施設工事費는 需用者の 負擔으로 한다

第4條(工事費의 融資) 前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工事費中에서 市費基金은 이를 電氣事業者에게 融資한다

第5條(連帶債務) ①電氣需用者は 單位工事별로 市費基金의 債還에 關하여는 電氣事業者와 連帶債務를 진다

②電氣需用者の 建物을 取得한 者는 溝納된 債務와 그 權利를 承繼한다

第6條(事業計劃) ①市長은 市費基金이 確保되었을 때에는 電化事業計劃書 및 資金計劃書를 作成하여 電氣事業者에게 通知한다

②市長은 電氣를 需用하고자 하는 者로 하여금 第3條 第2號의 規定에 自己負擔金을 單位工事별로 一括하여 電氣事業者에게 1月以内에 預置한 것을 通知한다

③電氣를 需用하고자 하는 者는 前項의 通知를 받았을 때에는 그 期間內에 自己負擔金額을 單位工事별로 一括하여 이를 預置한後 그 證明書를 提付하여 電氣施設要請書를 單位工事별로 市長과 電氣事業者에게 각각 提出하여야 한다

第7條(事業計劃의 變更) ①電氣事業者は 前條의 事業計劃中에서 不得已한 理由로 因하여 工事が 不可能한 時遇에는 市長에게 그 상況을 報告하여야 한다

②市長은 前項의 事由가 正當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事業計劃을 變更하고 그 工事を 他單位工事에 轉用指置할 수 있다

第8條(施工) 電氣事業者は 前項의 規定에 依한 基金과 電氣施設要請書를

(4) 조 래

반았을 때에는事業計劃에 따라 遷滞없이 當該工事에着手하여야 한다
第9條(貸付期間) 市費基金은 貸付期間은 5年으로 한다 다만 市長이 特別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는 電氣事業者와 協議하여 市費基金貸付期間
이를 變更할 수 있다

第10條(利息과 債還) ①市費基金은 無利子로 貸付한다

②市費基金은 1年据置하고 4年償還으로 한다 다만 前條但書에 依한 境遇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條(債還金徵收) ①市費基金의 債還金은 電氣事業者가 每月分 電氣使用
料를 徵收할 때 이를 一括하여 徵收하여야 한다

②電氣事業者は 電氣需用者로 부터 徵收한 市費基金의 債還을 年 4回로
區分하여 市長에게 債還하여야 한다

③電氣事業자는 年 4回 電氣需用者別 市費基金 債還實績調書를 作成하여
市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12條(監督) 市長은 市費基金의 使用 및 工事施工狀況에 對하여 必要한 措
置를 命하거나 書類의 提出을 電氣事業者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第13條(施行規則) 이 條例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한다

附 則

i)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 土地區劃整理費 特別會計設置條例中 改
正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년 4月 14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73號

서울特別市土地區劃整理費 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

서울特別市 土地區劃整理費 特別會計設置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 第18號 夕음에 夕음 각號를 新設한다

19. 華陽土地區劃整理事業

- 20. 倉洞地區創整理事業
- 21. 忘憂地區創整理事業
- 22. 麗村地區創整理事業
- 23. 延韓地區創整理事業
- 24. 金浦地區創整理事業

附 則

i)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규칙

서울特別市 水道事業特別會計條例施行規則中 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4月 3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④ 서울特別市規則第631號

서울特別市 水道事業特別會計條例施行規則中 改正規則

서울特別市 水道事業特別會計條例施行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水道事業特別會計에 徵收官, 經理官, 物品管理官, 支出員, 収入員, 物品出納員과 分任者를 다음 구분에 依하여 각각 指定한다

1. 本 聞

徵 收 官	水道局長
分 任 徵 收 官	業務課長
經 理 官	水道局長
分 任 經 理 官	經理課長
物 品 管 理 官	經理課長
支 出 員	經理課經理係長
收 入 員	業務課課務係長
歲 入 賽 出 現 金 出 納 員	經理課調達係長
物 品 出 納 員	經理課營財係長
分 任 物 品 支 出 員	名課主務者

臨時前波資金出納員 市長이 必要에 따라 指定

2. 事業所

分任徵收官 事業所의 長

分任經理官 事業所의 長

分任物品管理官 事業所의 長

分任支出員 事業所의 庶務係長

(庶務係長이 없는 所는 庶務主務者)

分任收入員 事業所의 収納係長 및 資材係長

分任物品出納員 事業所의 庶務係長 및 資材係長

(庶務係長이 없는 所는 庶務主務者)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立病院收價條例施行規則中 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4月 10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632號

서울特別市立病院收價條例施行規則中 改正規則

서울特別市立病院收價條例施行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 1. 免除對象者(無料対象者) 「마」 다음에 「자, 아, 자, 차」를 다음과 같

이 摘入하고

사. 重要行事에 參席하던 公傷者

아. 都市計劃事業執行으로 因한 被收用者側의 負傷者

자. 市에서 直營하는 作業現場에 從事하던 公傷者

차. 國防部산하에서 發行하는 派越將兵 戰死者遺家族證明 또는 確認證明

所持者 다만 家族의 範圍는 同一戶籍內에 있는 直系尊卑屬(그 配偶者包含) 및 弟妹로 한다

同條 2. 減額對象者(實費対象者)

가. 中 「要救護對象者」 다음에 「또는 零細民」을 摘入하고

나. 中 「派越將兵戰死者家族」 및 을 刪除한다

附 則

이 규칙은 1967년 4월 20일부터施行한다

서울特別市 機構改編審議會 規則을 制定하여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4月 12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633號

서울特別市機構改編審議會規則

第1條(概要) 서울特別市の 機構을 合理的으로 改編하기 為하여 서울特別市
機構改編審議會(以下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第2條(職務) 委員會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1. 機構의 不備 또는 問題點調査
2. 首都行政需要에 對應하는 機構展望研究
3. 統一 서울에 對備하는 機構改編의 具體的 方案
4. 機構改編 및 法律案作成審議
5. 諸各號에 關係되는 諸般問題審議

第3條(組織) ①審議會에 委員長 1人, 副委員長 2人과 委員 20人以內로 組織
한다

②委員長은 第1副市長 副委員長은 企劃管理官과 內務局長이 된다

③委員은 市公務員中에서 委員長의 提請으로 市長이 任命한다

④審議會의 차문에 應하기 為하여 副委員長 2人을 두되 委員長의 提請으로 市
長이 委嘱한다

第4條(委員長與副委員長의 職務) ①委員長은 審議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理한다

②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이 事務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指名한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5條(會議) ①審議會는 委員長이 召集하고 그 講長이 된다

②審議會의 會議는 在籍委員過半數의 賛成으로 決定한다

第6條(研究班) ①審議會의 管掌事項을 分掌進行하기 為하여 研究班을 둔다

(8) 규 칙

- ②研究班員은 市公務員中에서 委員長의 提踏으로 市長이 任命한다
③研究班員은 委員長의 指導監督를 받아 調査研究事務에 從事하고 審議會
議에 出席하여 所管事務에 對하여 發言할 수 있다
- 第7條(協助) ①審議會는 必要한 情況에는 關係機關에 對하여 資料의 提出 또
는 人力의 支援을 要求할 수 있다
②關係機關의 長은 前項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他에 優先하여 이에 廉하
여야 한다
- 第8條(報告 및 建議) ①審議會에서 決定된 事項에 對하여는 市長에게 建議
하여야 한다
②研究班에서 調査, 研究한 事項에 對하여는 委員長에게 書面으로 報告하
여야 한다
- 第9條(幹事) ①審議會에 幹事 1人을 두되 人事課組織管理係長이 되다
②幹事는 審議會議에 參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附 則

- ①(施行日) 이 規則은 西紀 1967年 4月 10일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職制中 改正規則는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년 4月 19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②서울特別市規則第634號

서울特別市職制中改正規則

서울特別市職制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8條(土木課) ①土木課에 土木係, 道路係, 特殊施設係, 橋梁係와 照明施
設係를 두고 土木係長, 道路係長, 特殊施設係長과 橋梁係長은 土木技佐
또는 地方土木技佐로 照明施設係長은 電氣技佐 또는 地方機械技佐로 補한
다

②土木課의 係別分掌事務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土木係

규칙(9)

- 가. 土木에 관한 調査, 計劃 및 資料의 綜合整理事及 聞聯工事計劃의 調整
나. 一般道路, 道路工作物 및 附屬物의 改良 및 維持補修
다. 土砂道의 維持補修
라. 平面交叉部 街路의 改良 및 雜流化施設에 關한 事項
마. 一般道路上의 步行用 階梯의 設計, 施工監督과 維持管理
바. 高架道路, 高速道路, 有料道路의 新設에 關する 設計施行監督과 維持
管理
사. 諸內 他係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2. 道路係
- 가. 一般道路(國道, 特別市道, 都市計劃, 道路 및 車用道路) 및 道路工作
物及 附屬物新設 擴張의 設計, 施行監督
3. 特殊施設係
- 가. 地下鐵道新設, 工事의 設計, 施工監督 및 維持管理
나. 地下道 및 地下廣場等 地下都市, 施設物의 設計, 施工監督 및 維持管
理
다. 市街部道路上의 獨立된 構造의 立體交叉路施設의 設計施工監督 및 維
持管理
4. 橋梁係
- 가. 道路工事로 隨伴하지 않는 單位事業으로서의 橋梁, 工事의 設計, 施
工監督
나. 大規模 橋梁工事와 이에 부수되는 接續道路의 設計 施工監督
다. 橋梁의 維持管理
5. 照明施設係
- 가. 街路燈과 道路附屬物의 照明施設 設計施工監督과 維持管理

附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경찰관 파출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의 전증 계장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7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김천우

②서울특별시규칙 제636호

경찰관파출소의 명칭, 위치의 판할구역의 전중 개정규칙

경찰관 파출소의 명칭, 위치와 판할구역의 전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경찰관 파출소의 명칭, 위치와 판할구역의」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 용산경찰서, 한남동 파출소의 위치」 「용산구 한남동 257의9」를 「용산구 한남동 357의50」으로 하고

서울 청량리 경찰서란 중

명칭	위치	판할구역
역전파출소	동대문구 진농동388	진농동 612-613, 617 620-622, 637 988중(개 천농동 2동 11동 9반)의 96-98, 101, 389-393, 388중 진농동 2동 11동 9동 청량리동 172, 173-179, 182, 188, 176중 15동
청량리파출소	동대문구 청량리동 신1	청량리동중(개 신 2-8, 150-205) 청량리동중 신1중(개 청량리 2동 3-9동) 청량리동중 180중 청량리 1동 11동, 12동 제기동 95, 96, 13중 제기동 1, 2, 3, 10, 11, 12 1반

을

명칭	위치	판할구역
역전파출소	동대문구 진농동388	진농동 612-613, 617, 620-622, 537 388중(개 천농동 2동 11동 9반) 청량리동 172, 175-179 182, 188, 180중(개 청량리 2동 1동 청량리 1동 11, 12동) 181중(개 청량리 2동 2동) 제기동 95, 96, 13중(제기동 1동중 1, 2, 3, 10, 11, 12

규칙(11)

		동 3동 중 1반) 용두동 8, 9
청량리파출 소 166	동래문구 청량리동 166	청량리동 중(예 산 2-8 190-205) 산 1(예 청량리 2동 3, 9동) 180(청량리동 11, 12동) 진농동 96-58, 101, 389, 393-611 388 진누동 2동 11, 9동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特別市職員規程中 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4月 26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637號

서울特別市職員規程中 改正規則

서울特別市職員規程中 다음과 같이 改正된다

第12條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揿入한다

③職員은 그直近上級監督者が勤務成績이不良하다고認定할 때는
解雇시킬 수 있다

第12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2條의2(勤績加俸) 職員의勤績加俸은 地方公務員報酬規程 第22條을準用하여 純 8回를超過하지 못한다

別表第1號「日給職員의職名 및 日給限界表」第3種欄中「警備員」 다음에
「監視員, 보모」를 揿入하고

別表第3號「日給職員의俸給表」 및

別表第4號「月俸職員의俸給表」를 각각 別紙와 같이 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규칙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別表第3號 및 別表第

(12) 규칙

4호의 규정은 西紀1967年 4月 1日부터 適用한다

②(超過措置) 勤續加俸 3回를 받고 當該級類의 昇給期間을 超過한 履脩員에
適用하여 西紀 1967年 4月 1日字로 4回를 加給할 수 있다③이 規則 施行當時 勤續加俸을 받고 있던 履脩員의 勤續加俸額은 이 規則에
依하여 西紀 1967年 4月 1日字 再發令하여야 한다

別表 3. 日給履脩員의 俸給表

號 別	區 分	俸 給			
		本 俸	職 貢	手 當	計
1	號	150원	59원		209원
2	夕	151	59		210
3	夕	152	60		212
4	夕	153	60		213
5	夕	154	60		214
6	夕	155	60		215
7	夕	156	60		216
8	夕	157	61		218
9	夕	158	61		219
10	夕	159	61		220
11	夕	160	61		221
12	夕	161	62		223
13	夕	162	62		224
14	夕	163	62		225
15	夕	164	62		226
16	夕	165	63		228
17	夕	166	63		229
18	夕	167	63		230
19	夕	168	63		231
20	夕	169	63		232

규칙(13)

21	◇	170	64	234
22	◇	171	64	235
23	◇	172	64	236
24	◇	173	64	237
25	◇	174	65	239
26	◇	175	65	240
27	◇	176	65	241
28	◇	177	65	242
29	◇	178	66	244
30	◇	179	66	245
31	◇	180	66	246

別表 4. 月俸職員의 俸給表

號別	1號	2號	3號	4號	5號
本俸	3,900	4,150	4,400	4,650	4,900

서울特別市立運動場使用料 徵收條例 施行規則을 制定하여 이에 公布합니다

西紀 1967年 4月 26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638號

서울特別市立運動場使用料徵收條例施行規則

第1條(目的) 이 규칙은 서울特別市立運動場使用料 徵收條例(以下條例라 한다)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使用許可) 運動場(體育館을 包含한다)의 使用許可事務는 다음 各號 와 規定에 依한다

- 體育以外의 目的으로 專用되는 使用 및 一般觀覽料 301원 以上을 徵收하는 競技의 許可是 當該運動場(以下體育館長을 包含한다)을 記由 하여 市長이 許可한다

0204

(14) 규 칙

2. 一般觀覽料 300원 以[의 競技使用은 運動場長이 專行한다]
3. 無料觀覽의 使用 및 競技時間延長使用(別紙第1號書式) 은 運動場長이 專行한다
4. 商行爲上의 使用許可는 (別紙第2號書式)運動場長이 專行한다
5. 運動場長은 重要하거나 異例의 事項이라고 認定되는 것은 市長의 事前承認을 받아 處理하여야 한다

第3條(適用範圍) ①條例第10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한 高等學校以下라 함은 學校 또는 學校의 體育團體나 教育關係機關 또는 大韓體育會나 그의 加盟團體가 主催하거나 共催하여 參加者가 學生인 條例에 限한다
②條例 第10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1回使用料라 함은 1日의 使用時間으로 基準으로 한다
③條例使用料表中 映畫撮影이라 하은 觀覽客이 없이 映畫製作會社에서 自己施設을 裝置하여 摄影한 내용, 競技撮影이라 함은 競技進行 事項을 摄影하는 것으로 한다
④條例使用料表中 映畫撮影이라 하은 觀覽客이 없이 映畫製作會社에서 自己施設을 裝置하여 摄影한 내용, 競技撮影이라 함은 競技進行 事項을 摄影하는 것으로 한다

第4條(報告) 運動場長이 運動場의 使用許可를 하였을 때에는 每週分을 翌週 火曜日까지 使用料精算書(別紙 第3號書式)正副本을 作成하여 市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다만 競技가 數週에 거칠때에는 競技終了後 報告한다

第5條(使用料의 收納) ①運動場使用料는 歲入歲出外 現金出納員이 收納保管하고 使用當日에 歲入決算하여 늦어도 翌日 午前까지 市金庫에 存入하여야 한다

②使用料의 分納은 3日間隔로 할 수 있으며 第1回의 納付는 專用日 7日前에 2回分부터는 各分納期日前日까지 納付하여야 한다

③費削制에 依한 使用料의 生納은 基本額을 基準으로 하고 雨天等豫備日의 使[用]料는 使用當日 午前中까지 徵收한다

④市長이 許可한 使用料는 運動場長이 徵收한다

第6條(無料入場) 無料入場은 다음 각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 限하여 運動

場長이 허가할 수 있다

1. 運動場使用料一切을 無料로 하는 政府 및 國慶 告記念行事 市民慰安會 參席者
2. 各級學校單位體育大會의 專用學校學生
3. 大會競技의 主催者 指當任員 出戰選手 新聞社 通訊社 放送局의 體育部出入記者
4. 市長이 허가한 者

第7條(觀覽票) 觀覽券의 發賣場所는 運動場長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發賣場所責任者는 運動場長의 同意를 얻은 後 賣主渠을 主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第8條(招請狀) ①專用者は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는 市長의 허가를 얻어 觀覽하고자 하는 者를 無料入場하도록 招待할 수 있다

②招請狀은 發行前에 當該運動場長의 檢印을 받아야 하며 그 觀覽券는 專用者が 負擔하여야 한다

③有料觀覽에 있어서의 招請狀은 當該競技의 最高觀覽料를 基準으로 觀覽料를 徵收하고 無料觀覽에 있어서의 招請狀은 入場料로 한다

第9條(觀覽券) ①一切의 觀覽券의 印刷는 專用者 負擔으로 當該運動場長의 檢印을 받아 發賣하여야 한다

②觀覽券에는 觀覽料의 內容을 明示하여야 하며 專用者は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市長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区分할 수 있다

1. 特別券
2. 一般券
3. 軍警, 學生券
4. 招待券(招請狀)
5. 國體券(一般 및 學生)

③運動場長은 檢印된 觀覽券의 残票를 1年間 保管하고 回收되는 觀覽券은 運動場長이 受領하고 競技終了와 同時に 專用者 立會下에 소각하여야 한다

(16) 규 침

第10條(職權取消) 運動場長은 다음 각號의 1에 該當한 때에는 既히 許可한 使用日을 職權으로 取消할 수 있다 雨天으로 因하여 施設物維持管理가 困 難할 때

②專用料를 納付하지 아니하였을 때

第11條(賠償金) 場長은 施設備品의 破損 滅失에 對한 賠償은 原狀復舊의 實費를 徵收한다

第12條(委任者申告) 專用者는 使用日前까지 要覽券取扱 및 金錢出納員을 選定하여 委任狀(別紙4號書式)을 當該運動場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3條(出入證發行) 市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職務를 圓滑히 運行하기 為하여 關係公務員에게 出入證(別紙 第5號書式)을 發行할 수 있다

第14條(非商行為의 使用料免除) 競技實況만을 目的으로 한 非商行為에 對한 放送中繼에 있어서는 使用料를 받지 아니한다

第15條(使用料의 減免事由) 市長은 다음 각號의 1에 該當한 때에는 動場場 使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

1. 世界的의 規模의 競技(世界選手權大會)
2. 亞細亞 또는 東洋의 規模의 競技(亞細亞 또는 東洋選手權大會)

第16條(入場券等 燒掉) 入場券 練習券 超過料徵收證은 別表와 같다

第17條(審查委員會 構成) 運動場使用料審查委員會의 委員長은 内務局長 委員은 總務課長 緯算課長 및 監查官이 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別紙第2號書式

競技時間延長使用許可願

大會名

競技名

基本競技時間

超過競技時間

上記와 같이 競技時間を 超過使用로 하오니 許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西紀 19 年 月 日

主 催 者 印

競技時間	自 至	時 時	分 分
超過時間		時	

上記와 같이 確認함

確認者

競技主催者

競技場勤務者

場長 點下

別紙第2號書式

放送申請書

競技名

競技日時

中繼料納付額

주

電氣使用與否

使用

自家發電

上記와 같이 申請함

西紀 19 年 月 日

放送局

印

姓名

印

主催者承諾

印

主催者名

長 點下

0206

(18) 特 别

別紙第3號書式

1. 藝 技 名
2. 使用期間
3. 精算總額

使 用 料 精 算 書

區 分		金 額	算出基礎	施 設 名	備 考
賦 額 制	特別觀覽券 一般觀覽券 軍警學生券 一般團體券 團體卷 商行為使用料 小計				
專 用 料	施設使用料 設備使用料 時間超過使用料 入場料 小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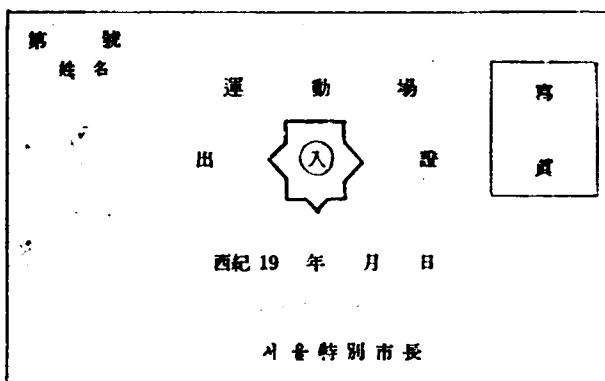
別紙第4號書式

委 任 狀					
大會名					
今般大會期間中			의 理事에게 現金出納 및 事務取扱		
一切署 委任하나이다					
西紀 19 年 月 日					
住 所					
團 體 名					
代表者姓名					

長 嘴下

0207

別紙第5號證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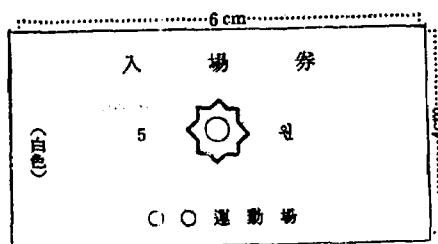


(裏 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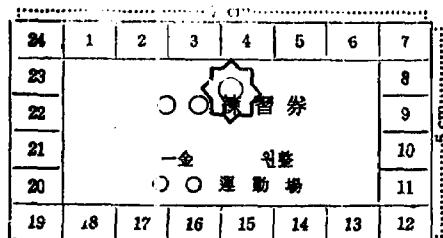
1. 本證은 他人에게 賦與할 수 없다.
2. 本證을 紛失하였을 때는 即時申告하여야 한다.
3. 本證所有者가 出入하고자 할 때는 正當한 事由없이 不應할 수 없다.
4. 本證은 運動場出入以外의 目的으로 使用할 수 없다.

別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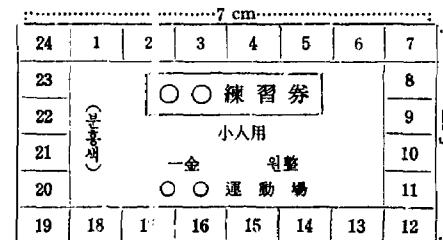
1. 入場券



2. 練習券(陸上, 足球, 球球, 排球, 卓球)



3. 練習券(スケート, 水泳場)



.....7 cm.....							
24	1	2	3	4	5	6	7
23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練習券		8
22	綠						9
21	色	一金	銀				10
2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運動場			11
19	18	17	16	15	14	13	12

4. 超過料徵收證

.....6 cm.....

超過料徵收證	
一金	銀
練習超過料	
<input type="radio"/>	
運動場	

5. 練習券(裏面)

四、本練習券은 他人에게 引渡 되는 貸與할수 있음	一、練習하기 위하여 入場권을 本券 교환을 수도되며 提示 하여야 함
다	二、本練習券은 一回의 時間으로 使用되는 本券을 超過 할 때에는 前項에 依하여 超出한 使用料의 단을 追加로 付어야 함
다	三、本練習券은 運動場 한 곳에 수도되며 提示 하여야 함

0208

사령

(1967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행정이사관 조 성 래

제경부이사관에 임한

1호봉을 급함

경제과학심의회 사무국 근무를 명함

양묘장 지방임업기사 허 형 석

산업국 녹지과 보호체장 직무대리를 명함

사방관리소 지방임업기사 이 근 앱

사방관리소장 직무대리를 명나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사무관 정 호 진

기획판 종합기록담당판에 보나

판평율수국 장 난 진

복직을 명함

공무원교육원 서무과 서무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재경사무판 김 영 두

통계판 통계조사담당판 직무대리를 명함

농정과 지방수의사 김 장 인

제1도장 장장 직무대리를 명나

신 기 준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지방의무 기과에 임한

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보건소 방역과장에 보함

서대문구보건소 지방의무기과 이 형 삼

지방의무기정에 보함

사명 (23)

4호봉을 급함

용산구 보건소장에 보함

시민회관 지반기체기사	홍	종	석
시민회관 기술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감사관보와 지방재정주사	김	경	호
경리과 경리제장 직무대리를 명함			
구회정리과 지방토목기사	김	종	상
구회정리과 환지제장 직무대리를 명함			
하수과 지방토목기사	김	영	석
동부건설사업소 소장 직무대리를 명함			
보광동수원지사무소경시설과 지방토목기사	이	도	완
개회과 지역계획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건설국토목과 지방토목기사	윤	남	타
남부토지구회정리사업소 소장직무대리를 명함			
수유토지구회정리사업소 지역토목기사	우	병	운
토목시험소 토질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토목과경계과 지역 계획과장 토목기과	이	영	
서부토지구회정리사업소 소장직무대리를 명함			
구회정리과 환지제장 지방토목기과	김	인	석
구회정리과 계획계장에 임한			
동부건설사업소장지방토목기과	전	진	천
동부 토지구회정리사업소 소장에 임한			
토목시험소 토질과장 지방토목기과	김	진	우
주택과 택지조성계장에 임한			
종로보건소 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조	동	진
중구보건소 위생과장에 임한			
공보실 공청제장 지방행정사무관	우	근	승
종로구보건소 위생과장에 임한			

0209

(24) 사 행

농림부 철출을 명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서기보 김	순	결
행정서기보에 임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순	결
7호봉을 금함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문 무 봉		
지방비서관(3급 을 상당)에 임함			
4호봉을 금함			
시장실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수도국 행정부이사관 김	원	하
행정이사관에 임함			
3호봉을 금함			
서울특별시 수도국 근무를 명함			
④1967년 4월 6일			
	충부병원 지방약무기사 임	재	승
서대문병원 약제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중구보건소 조건부지방간호기원보 이	복	환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서부수도자연소 지방행정서기보 이	임	주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종로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전	봉	심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④1967년 4월 7일			
	이 진 혁		
조건부 행정서기보에 임함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공업파 지방행정주사보 민	병	구

사령 (25)

세정과 지방사세주사 이 중 상

원에 위하여 그직을 면함

◎1967년 4월 10일

경 이 강

조선부 지방행정주사보에 입함

내무국 행정과 근무를 명함

전 이 중

조선부 지방재정사무관에 입학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1967년 4월 11일

경 구 원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의무기경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구보건소장에 보함

◎1967년 4월 12일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 수 경 수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보 한 속 자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원보 지 내 영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한

관리과 지방행정서기보 이 연 구

원에 위하여 그직을 면함

영동고병원 지방보건기사 장 인 근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1967년 4월 13일

용산공익전당포 지방행정사무관 박 춘 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한

수도국 지방도록기과 윤 경

0210

(26) 자 행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과연에 처함

전속과 지방전속기과 한 기 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1967년 4월 14일

총무과 지방행정서기보 김 청 자

간사관보와 지방행정주사보 김 용 평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1967년 4월 15일

이 기 베

기한부 공무원(조회승 휴직 / 간증)에 임함

급율류 7호봉을 급함

5 서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국립계찰병원 이 선 열

서울특별시 건립을 명함

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운수사업과 지방행정주사보 황 상 하

동대문구 지방행정주사보 이 걸 석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칭 호

용산구 지방행정서기보 서 재 학

수도관리사업소 지방기체기사보 황 한 글

중부자동차운수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재경서기 김 명 숙

서부병원 근무를 명함

불광토지구획정리사업소 지방토목기원 이 진 훈

불광토지구획정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이 은 태

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4 행 (27)

불광토지구획정리사업소 지방토목기원보 날	상	복
수유토지구획정리사업소 지방토목기원 박	익	현
구획정리과 근무를 명함		
수유토지구획정리사업소 지방토목기원보 원	순	경
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토목도지구획정리사업소 지방토목기원 박	석	은
동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구획정리과 지방토목기원보 신	호	준
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구획정리과 지방토목기원보 이	전	우
동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구획정리과 지방토목기사보 김	요	익
동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구획정리과 지방토목기사보 윤	택	진
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구획정리과 지방토목기사보 송	예	식
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로 명함		
구획정리과 지방토목기사보 김	문	학
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토목기사 인	최	태
중구경 동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도목시험소 지방토목기사 최	종	우
구획정리과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체기사 전	영	호
구획정리과 근무를 명함		
불광토지구획정리사업소 지방토목기사 박	문	재
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불광토지구획정리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조	한	우

(28) 사 행

구획정리과 근무를 명함	최	중	글
수유토지구획정리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동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이	창	성
면목토지구획정리사업소 지방토목기사			
동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김	인	규
면목토지구획정리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구획정리과 근무를 명함	김	용	평
비서 (4급갑류상당)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제1부시장실 근무를 명함	서태문구 기체기사보	조	봉
지방기체기사보에 임함			관
5호봉을 급함			
수도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이	종	재
농촌지도소 조천부농촌지도원			
농촌지도원에 임함			
7호봉을 급함			
농촌지도소 근무를 명함			
◎1967년 4월 17일			
성동구보건소 지방의무기과 신	신	영	희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운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김	희	원
칠곡군 전출을 명함			
◎1967년 4월 18일			
제회과 지방행정주사	최	상	철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1967년 2월 20일			

안성군 경 서 현

서울특별시 결임을 명함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호봉을 급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농업기사보 오 흥 식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 이 웅 기

행거주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관광운수국 관광과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 문 병 일

성동구 근무를 명함

◎1967년 4월 25일

남부병원 지방조무수 김 광 희

서내분 병원 근무를 명함

◎1967년 4월 26일

종로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 김 호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1967년 1월

11일자 경제처장(전체) 발령을 동일자로 취소한

계획과 조선부지방도목기원보 강 희 친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한

만리동매수지사무소 지방전기보조수 고 당 선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종로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 노 경 선

복직을 명함

0212

(30) 사령

종로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1967년 4월 27일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이 현 철

용산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적기사보 유 재 성

종로구 근무를 명함

보건과 지방행정주사 김 경 친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1967년 4월 1일

지방사세주사보 申 榮 植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봉 2월에 처함

◎1967년 4월 3일

총무과 4등급 지방조무(운전)원 문 봉 식

승인출장소 지방농업기원 구 연 원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1967년 4월 6일

삼양제1동 지방행정서기 金 壯 培

정능제3동 지방사세서기보 趙 鵬 大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1967년 4월 15일

종암동 지방행정서기 朴 賢 百

인수동 근무를 명함

정능제2동 지방행정서기보 李 麟 浩

길음동 근무를 명함

길음동 지방행정서기보 文 洪 植

장석동 근무를 명함

인수동 지방행정서기보 金 尚 彥

정능제2동 근무를 명함

장식동 지방행정서기보 王 謙 敦	
총암동 근무를 명함	
전설과 지방행정서기 천	발 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을 명함	
산업과 임업기원보 박	승 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을 명함	
지방진축기사보 이	문 치
전설과 근무를 명함	
◎1967년 4월 18일	
청소과 지방행정주사 이	복 동
서내인 218-2290(67년 4월 13일) 「공무원 경기 호봉 승급 및 취소통보」로 인하여 66년 7월 1일자(경기승급) 근속가동 1,000 원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1967년 4월 19일	
승인출장소 임업기원 錄	閔 淳
승인출장소 임업기원보 鑄	命 壽
복직을 명함	
승인출장소 근무를 명함	
노래출장소 지방임업기원보 李	命 壽
복직을 명함	
노래출장소 근무를 명함	
◎1967년 4월 20일	
성북구송천동 조선부지방행정서기보 元	炳 審
원이 의하여 그직을 면함	
◎1967년 4월 4일	
총무과 지방조무수(다자) 이	영 차
신풍미제2동 지방행정서기보 강	수 동
원이 의하여 그직을 면함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1094호 중 3(기타)항 가(시설점자)호의 「월1회이상」을 「년 4회이상」으로 개정한다

서기 1967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서울특별시고시제20호

도로구역 결정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이에 고시합니다

서기 1967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종류	로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경과지	구역 결정 이유	비고
특별 시도	사근-해당선	자. 사근동산 74~14 지. 해당동산 6~6	835미터	한약리학교	일반통행에 불하고자도 로개설하는 것임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21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 등록사항을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서기 196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사료성분 등록사항(변경 후)

등록 번호	공장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 료 의			사 료 의 성 分 상			유 효 기 간
			종류	명칭	용도	조달처	조치방	조첨유	
25	시축협사료공 장미포구신수 총 63-3	송명현 국. 주유 비합성 제조 자료	주사 증추용	%이 16	식 %이 3	상 %이 7	하 %이 10	67. 4 27부터 69. 4 26까지	

고 시 (3 3)

27	서울시축협사 료승장	송명원	유주비 합사료	생주시 합사료	유주용	19	3	6	9	+
2	중앙축산사료 서울구홍인동 175-12	양태현	주주비 합사료	No. 77 액사 료	중주용	16	3	7	10	+
73	〃	〃	유주사 료	No. 35 총특호 사료	9주 8	19	3	6	9	+
74	〃	〃	중주 사료	No. 75 특호 사료	죽병이 리사료	16	3	7	10	+
32	서부사료공사 마포구서교동 371-10	정규봉	산란 비 액 사 료	산란용 액 사 료	산란 제 식 사 료	15	25	7	11	+
55	〃	〃	입식기 정돈비 합사료	입식기 정돈비 합사료	입식기 정돈비 합사료	14	3	13	13	+
44	서부사고공사 마포구서교동 371-10	정규봉	중주비 합사료	중주시 합사료	중주용	16	3	7	10	+
45	〃	〃	유주비 합사료	유주사 료	유주용	19	3	6	9	+
49	한국사료공장 영등포구신길 동77	정해홍	유주비 합사료	No. 35 합사료	유주용	19	3	6	9	+
61	〃	〃	중주비 합사료	중주시 합사료	중주용	16	3	7	10	+
82	〃	〃	우주용 액 사 료	우주용 액 사 료	우주용	19	3	6	8	+
83	〃	〃	중주용 액 사 료	중특호 액 사 료	중주용	17	3	7	10	+
67	경육농축사료 공장내문 신내 528	김영희	유주비 합사료	유주비 합사료	유주	19	3	6	9	+
66	〃	〃	중주비 합사료	영육 1 합사료	중주용	17	3	7	10	+

0214

(34) 고 시

64	〃	〃	영 암 나요 함사료	영 체비 함사료	영 계용	17	3	6	9	〃	
85	〃	〃	중 학 나요 함	우 체비 나요 함	영 육 2호	중 추용	16	3	7	10	〃
22	미 동 사 료 공 업 성 동 구 청 호 동 산 51	이 출 근 우 체 나 요 함	우 체 나 요 함	영 아리 함 사 료	유 추 금 가	유 추 금 가	19	3	6	9	〃
9	〃	〃	중 학 나 요 함	중 학 나 요 함	중 학 나 요 함	중 추용	16	3	7	10	〃
53	중 약 사 료 공 사 중 내 문 구 제 기 동 35	정 철 호 배 료	유 추 용 가	유 추 용 가	유 추 용 가	유 추 용 가	19	3	6	9	〃
54	〃	〃	중 학 나 요 함	중 학 나 요 함	중 학 나 요 함	중 추용	16	3	7	10	〃
47	영 동 사 료 주 식 회 시 영 등 양 평 동 4 가 80	김 복 순 임 사 료	우 체 비 함 사 료	우 체 비 함 사 료	유 추 특 히 비 함 사 료	유 추 용 가	19	3	6	9	〃
48	〃	〃	중 학 나 요 함	중 학 나 요 함	중 학 나 요 함	중 추용	16	3	7	10	〃
49	〃	〃	우 체 비 함 사 료	우 체 비 함 사 료	영 체 비 함 사 료	영 체 비 함 사 료	14	3	7	10	〃
50	〃	〃	수 란 제 비 함 사 료	수 란 제 비 함 사 료	특 호 비 함 사 료	산 란 제 비 함 사 료	15	2.5	7	11	〃
69	한 일 상 사 사 로 공 정 등 체 모 구 상 동 350-6	차 무 홍 경 기 목	우 체 비 함 사 료	초 생 주 사 료	우 체 비 함 사 료	우 체 비 함 사 료	19	3	6	9	〃
70	〃	〃	중 학 나 요 함	중 학 나 요 함	중 학 나 요 함	중 추 용	16	3	7	10	〃
77	홍 성 사 료 공 사 상 동 구 성 수 동 2 가 323	경 내 원 2 호	중 학 나 요 함	중 학 나 요 함	중 학 나 요 함	중 추 용	16	3	7	10	〃
78	〃	〃	우 체 비 함 사 료	우 체 비 함 사 료	우 체 비 함 사 료	우 체 비 함 사 료	19	3	6	9	〃

고사 (35)

번호	주	주	증주용 체험사 료	증주용 체험사 료	증주용	17	3	7	10	주
88	주	주	유주용 체험사 료	유주용 체험사 료	유주용	19.5	3	6	9	주
89	주	주	산란계 우체험 사료	산란계 우체험 사료	산란계 1호용	15	3.1	5	11	주
90	주	주	증주용 체험사 료	증주용 체험사 료	증주용	16.5	3	7	10	주
91	주	주	유주용 체험사 료	유주용 체험사 료	유주용 체험사 료	19.2	3	6	9	주
79	내신사료공사 동대문구회경 동72-1	주	초생수 체험사 료	초생수 체험사 료	초생수 No. 30	19	3	6	9	주
80	주	주	증주용 체험사 료	증주용 체험사 료	증주용	16	3	7	10	주
개	11개공장	11	36.0							

◎서울특별시고시제22호

사후사업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망처인지를 고지드립니다.

서기 196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김 인 유희

1. 대체지

위 야 소 계 지			지목	지적	지정	세제	전면적	토지 소유자	비고
구	동	지번						주 소	상 등
성동	명일	산67	임야	0.87000	0.87000	0.87000	—	동국학원	김한기
주	주	68	주	1.41000	1.41000	1.41000	—	주	주

0215

2. 해제사유

본임지는 서기 1957년도 사방지정지로 사방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터사
업에 피해가 없음으로 해제합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51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914호 (66년 11월 6일) 고시된 대한 주택공사에서 시행
하는 일정의 주택지 경영 사업 구역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수용료를
다음과 같이 토지 수용법 제20조에 의거 세목 공고함

가. 공고내용 : 별첨 내역과 같음

나. 공고장소 : 시청 계시관

다. 공고기간 : 자 서기 1967년 4월 17일

자 서기 1967년 4월 26일 (10일간)

서기 1967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김 천 우

土 地 調 畫

所 在 地	地番	地目	地積	收用 坪數	所 有 者			備考
					住	所	姓 名	
永登浦區登村洞	215-9	E1	19	0.9	永登浦洞4街23-40		서상진	
夕	215-8	..	123	14	夕		夕	
夕	214-1	..	431	45	明倫洞4街206-14		이효혁	
夕	55	林	3,480	30	楊平洞1街31-4		유한용	
夕	53	..	1,680	150	乙支路3街186		황경식	
夕	52-7	..	2,190	240	新吉洞89-70		손원학	
永登浦區禾谷洞	2-7	日	769	13	登村洞397		이상하 외1인	
夕	2-6	..	728	0.9	夕		한길수	
計	8			493.80				

◎서울특별시공고제52호

서기 1967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광고 제24호로서 지정한 서울 도시계획사업 토도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예정지를 별첨 도면 및 조서와 같이 일부변경 지정합니다.

별첨 도면 및 조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성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관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 종합에 공합니다.

서기 1967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서울특별시공고제53호

옹시자격 정지처분 공고

서기 1967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시행령1회 5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필기시험에 응시한 다음 사람은 급격을 목적으로 부진행위를 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67년 3월 26일~69년 3월 25일) 이형애 위한 공무원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 처분합니다.

다음

옹시자격 정지처분자 명단

서기 1967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직 별	성 명	성별	생년 월 일	본적	현 주 소
행정직	김 용 배	남	43. 6. 17	충북	서울서대문보아원209의28
〃	박 유 순	여	48. 9. 9	경기	서울영등포장도산47(9-9)
〃	김 영 열	남	32. 12. 1	〃	서울성동행동314의(9-5)
〃	서 흥 기	〃	46. 9. 28	서울	서울동체문전농519 2-6)
〃	서 용 기	〃	34. 8. 20	〃	서울동내문창신9의(K1-7)
〃	강 진 쟁	〃	42. 10. 1	충남	서울영등포대방60(16-2)
〃	강 의 쟁	〃	37. 12. 23	〃	서울영등포대방44의199(1-2)

0216

(38) 공 고

〃	조 성 익	〃	37. 6. 25	서울	서울서대문대조74의153
〃	신 명 균	〃	46. 2. 21	전남	서울종로통일147의27(2-1)
〃	원 용 만	〃	36. 5. 1	경기	서울영등포구로공영주택1643
〃	김 영 철	〃	38. 5. 30	충북	서울영등포도립212

◎서울특별시공고제54호

건설부 고시 제738호(63년 12월 24일)로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사업인 영등포—시흥간(구청앞 로타리—신대방동 삼거리) 도로공사 구역내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사명 영등포—시흥간(구청앞 로타리—신대방동 삼거리간)
2. 토지 및 지장들의 세목공고 별지조서와 같음

서기 1967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장 김 천 육

土 地 調 察

地番	分割前表示		地番	分割後表示		所有者		備考
	地番	坪數		地番	坪數	住 所	姓 名	
1 永登浦585-1	664	坐	永登浦洞585-20	28	東仙洞315	金 祥洙		
2 〃 585-9	792	〃	〃 585-21	81	英등포동570	李 南善 外7人		
3 〃 585-15	7	〃	〃 585-22	5	〃 577	李炳順		
4 〃 585-13	2	〃	〃 585-23	1	〃	〃		
5 〃 577-16	19	〃	〃 577-79	0.6	〃 577-16	姜大永		
6 〃 577-52	37	〃	〃 577-81	0.8	〃 2가202	崔女龍		
7 〃 577-51	23	〃	〃 577-80	0.9	〃 577	金應鎮 예수교장士		
8 〃 580-4	104	〃	〃 580-103	2	〃 580-4	劉永登浦再 建教會		
9 〃 581-9	19	〃	〃 581-15	10	〃 581	朴贊述		
10 〃 582-3	9,154	〃	〃 582-17	852		東洋豪酒 會社		
11 〃 582-4	4,763	〃	〃 582-18	145		〃		

12	♦ 582-5	913	♦ ♦ 582-19	114		♦		
13	♦ 602-3	17	♦ ♦ 602-3	16-5	永豆浦山1	金昌洙 外19人		
14	♦ 602-4	43	♦ ♦ 602-4	34	♦	♦		
15	♦ 602-7	42	♦ ♦ 602-123	21	♦	♦		
16	♦ 602-35	69	♦ ♦ 602-35	48	♦	♦		
17	♦ 602-36	51	♦ ♦ 602-36	31	♦	♦		
18	♦ 602-37	38	♦ ♦ 602-117	2	♦	♦		
19	♦ 602-40	723	♦ ♦ 602-40	352	♦	♦		
20	♦ 602-110	4	♦ ♦ 602-110	3	下往十里465	大門佛母 龜頭寶珠 持財福		
21	大方洞262-8	159	♦ 大方洞262-2	29	大方洞山66	林晉俊		
22	♦ 261-1	51	♦ ♦ 261-13	24	永1卦96	朱賈五		
23	♦ 261-6	60	♦ ♦ 261-16	25	大方洞261-6	許賈玉		
24	♦ 261-12	60	♦ ♦ 261-17	34	♦ 261	鄭錫善		
25	♦ 261-40	57	♦ ♦ 261-15	22	♦ 261-4	黃善一		
26	♦ 261-3	100	♦ ♦ 261-14	70	新吉洞110-6	黃大植		
27	♦ 262-4	49	♦ ♦ 262-47	7	♦ 144	崔志澤		
28	♦ 262-40	68	♦ ♦ 262-53	2	♦	♦		
29	♦ 262-5	310	♦ ♦ 262-48	77	永3卦90	全池雲		
30	道林洞48-3	11	♦ 道林洞48-20	4	道林洞48	全玗英		
31	♦ 48-1	29	♦ ♦ 48-1	17	♦	♦		
32	♦ 48-4	41	♦ ♦ 48-4	34		李虎相		
33	♦ 48-6	9	♦ ♦ 48-23	0-9		♦		
34	新吉洞山 68-8	5林	新吉洞山1 68-14	1	道林洞6	李丙昌		
35	♦ 山68-2	1,133	♦ 山68-15	125	♦	♦		
36	♦ ♦ 81-1	60	♦ ♦ 81-2	27	孔德洞	李東俊		
37	♦ ♦ 145-2	1,005	♦ ♦ 145-3	96		天主教會廟 財		
38	♦ ♦ 146-2	305	♦ ♦ 146-3	11		♦		
39	♦ ♦ 147-7	7,540	♦ ♦ 147-1	514	明洞2卦1	天主教會		
40	新大方洞 537-1	239	坐 新大方洞 537-3	2	乙支路4卦255	大韓撲瓦 株式會社		

41	夕	539-1	333	夕	539-3	11		夕	
42	夕	542-2	166	夕	542-6	0.6	樓上洞166-169	金福茂	
43	夕	540-1	159	夕	540-3	137	新大方洞541	沈鴻雲	
44	夕	541-3	68	夕	541-5	0.5		李源永	
45	夕	557-27	97	夕	557-32	2	大方洞13-22	尹用坦	
46	夕	557-26	95	夕	557-38	22	新大方洞 557-26	鮮子昌源	
47	夕	557-24	77	夕	557-37	37	夕 557-24	全昌麟	
48	夕	557-23	79	夕	557-36	37	夕 176-1	金昌簡	
49	夕	557-22	96	夕	557-35	36	夕 557-22	梁台錫	
50	夕	557-21	63	夕	557-34	35	青坡洞2卦8	金義泰	
51	夕	557-19	81	夕	557-33	52	新大方洞 557-19	黃昌浩	
52	夕	557-31	54	夕	557-39	42		洪喆裕	
53	夕	558-15	28	夕	558-20	18	夕 558-15	方順根 丁順日	
54	夕	558-1	52	夕	558-19	8	夕 558-3	權玉順	
55		新道林908-1	81	畜	新道林908-1	80.2	本洞	高興玉	
56	夕	908-2	47	隼	908-8	3	嘉松洞15	成養仁	
57	夕	908-3	120	夕	908-3	21		夕	
58	夕	908-4	137	夕	908-4	23		夕	
59	夕	909-2	2,716	夕	909-3	153	厚岩洞244-90	朴治鉉	
60	夕	910-2	182	夕	910-2	14		夕	
61	夕	912-1	58	隼	912-1	20		夕	
62	夕	912-2	64	夕	912-2	9		夕	
63	夕	912-15	44	夕	912-15	3		夕	
64	夕	912-18	46	夕	912-18	11		夕	
65	夕	912-20	44	夕	912-20	11	夕 244-20	夕	
66	夕	912-23	44	夕	912-21	21		夕	
67	夕	912-25	38	夕	912-25	24		夕	
68	夕	912-26	20	夕	912-26	19		夕	
69	夕	918-46	24	夕	918-46	4		夕	

70	♦	918-48	39	♦	918-48	21	♦	♦
71	♦	918-49	46	♦	918-49	29	♦	♦
72	♦	919-2	1,119	♦	919-30	47	北阿嶽洞1-46	朴元喜
73	♦	948-1	3,606	♦	948-3	423	新堂洞357-6	朝鮮製油工業株式會社
74	♦	952-8	165	♦	952-10	37	♦	♦
75	新大方536-2	67	道	新大方536-4	40	楊平郡東全面 介百里117	李福永	
76	♦	541-1	7,547	件	♦	541-6	536	光陽町一丁目
							232	李輝永
77	新道林910-1	646	區	新道林910-1	114	孝昌洞127	朴觀厚	
78	大方洞264-3	385	企	大方洞264-11	120	大3-190	皮許子	
79	♦	264-10	158	♦	264-12	16	♦	♦
					264-13	0-7		
80	♦	264-9	252	田	♦	264-14	8	木228
81	♦	265-2	119	番	♦	265-9	39	大方洞223
82	♦	265-3	593	♦	265-10	30	♦	朴珠明
83	♦	265-3	301	件	♦	265-14	137	♦
84	♦	265-8	70	♦	265-15	45	道和34-6	李沈憲 全納文 牛1人
85	♦	265-12	297	♦	265-16	127	♦	♦
86	♦	265-13	98	♦	265-17	27	♦	♦
87	♦	265-5	54	番	♦	265-19	52	大方洞236
88	♦	265-4	58	♦	265-18	34	♦	♦
89	新吉洞424-3	406	田	新吉洞424-5	13	大7-164-9	趙漢九	
90	♦	425-4	526	果	♦	425-16	40	大4-182
91	♦	425-5	72	♦	425-17	23	大5-132	全永吉
92	♦	425-10	113	♦	425-18	16	新吉洞475-10	全賢洙
93	♦	425-11	129	♦	425-19	10	大5-132	全永善
94	♦	425-14	365	♦	425-20	23	♦	♦
95	♦	445-7	397	番	♦	445-12	61	新吉洞山90-7
96	♦	445-11	257	♦	445-14	26	♦	趙順在
97	♦	445-2	137	♦	445-13	9	♦	232
98	♦	446-1	307	田	♦	446-4	16	李敏紅

99	〃 446-3	150	〃 446-5	2 永17-121	丁 壇 舜
100	〃 448-3	731	基 河 川 道	18 元曉路278-1 9 〃 10 〃	李 盛 道
101	〃 448-6	58	〃 448-9 11	金 月 琴	〃
102	〃 448-2	264	〃 448-2	258	金 月 琴
103	永登浦洞581-5	27	基 水登浦洞581-13	9 永592-2	尹 京 勳
104	〃 581-7	8	〃 581-14	3 〃	〃
105	新吉洞221-13	6	道 行古洞221-42	3	姜 泰 锡
106	〃 221-7	20	〃 221-38	3	鄭 鶴 奎
107	〃 221-10	121	道 〃 221-43	15 道林洞66	鄭 垚 宦
108	〃 190-99	13	基 〃 190-181	2 新吉洞190-97	姜 信 垚
109	〃 190-100	26	〃 190-182	0.5 〃 366-109	韓 千 锡
110	〃 190-101	30	〃 190-183	3 〃	〃
111	〃 190-102	15	〃 190-184	3 新吉洞190-102	尹 完 永
112	〃 190-103	24	〃 190-185	6 〃 190-103	宋 鶴 義
113	〃 190-109	34	〃 190-186	12 〃 190-109	崔 京 琴
114	〃 190-110	30	〃 190-187	11 〃 190-110	申 斗 慷
115	〃 190-172	47	〃 190-189	11 〃 190-172	池 在 赫
116	〃 190-174	22	〃 190-190	19 〃 190-174	吳 得 琴
117	〃 190-171	34	〃 190-188	0.8 〃 190-171	李 建 洗
118	〃 190-176	7	〃 190-191	1 〃 190-176	梁 龍 环
119	〃 192-155	52	〃 192-171	9 〃	〃
120	〃 192-156	21	〃 192-172	6 〃 192-156	金 興 天
121	〃 220-13	20	〃 220-62	2 〃 220-13	張 泰 淑
122	〃 220-55	9	〃 220-68	5 〃 220	李 丙 澤
123	〃 220-56	299	〃 220-67	76 〃	〃
124	〃 220-37	777	〃 220-66	213 新堂洞308-13	金 昌 根
125	〃 220-16	94	〃 220-16	53 新吉洞220-16	吳 光 善
126	〃 220-31	36	〃 220-31	19 漢江路2가391	金 錫 恒
127	〃 221-17	65	〃 221-17	28 新吉洞220	金 錫 恒

총 고 (43)

128	♦ 220-20	75	♦ 220-20	66	♦ 山68	林 桂 成
129	♦ 221-6	141	♦ 221-8	93	♦ 221-6	姜 泰 頤
130	♦ 221-9	155	♦ 221-9	144	♦	♦
131	♦ 221-5	100	♦ 221-36	11	♦ 221-8	♦
132	♦ 221-6	98	♦ 221-37	15	永5卦126	張 在 翔
133	♦ 253-36	16	♦ 253-171	9	新吉洞253-36	秦 賢 力
134	♦ 253-50	41	♦ 253-164	16	阿嘎洞187	紫 宏 勵
135	♦ 253-51	25	♦ 253-165	10	永5卦13	陶 順 克
136	♦ 253-57	27	♦ 253-168	10	♦	♦
137	♦ 253-58	31	♦ 253-169	12	♦	♦
138	♦ 253-40	30	♦ 253-172	10	新吉洞104	金 武 勵
139	♦ 253-41	33	♦ 253-173	1	♦ 253-41	惟 宇 敏
140	♦ 253-42	33	♦ 253-174	12	♦ 253-42	李 在 律
141	♦ 253-43	40	♦ 253-175	3	♦ 253-43	元 錄 治
142	♦ 253-47	43	♦ 253-162	14	永1卦96	朱 益 五
143	♦ 253-52	33	♦ 253-166	11	永5卦149	吳 弘 優
144	♦ 253-35	51	♦ 213-176	14	新吉洞253-35	徐 丙 韶
145	♦ 253-48	40	♦ 253-163	2	莫里洞2卦92	全 宗 一
146	♦ 253-45	43	♦ 253-160	11	新吉洞253-45	全 實 治
147	♦ 253-53	36	♦ 253-167	7	♦ 253-53	黃 苦 一
148	♦ 253-46	47	♦ 253-161	5	♦ 253	全 宗 孝 治
149	♦ 253-119	723	♦ 253-170	24	明洞2卦1	新羅維治 京城地區 天主教會 監 鐵 明
150	♦ 233-71	87	直 ♦ 233-167	31	昌德洞560	
151	♦ 250-2	38	♦ 250-5	8	新吉洞249	調 鼓
152	♦ 251-3	44	♦ 251-6	4	永5卦306	全 演 宏
153	♦ 226-78	56	直 ♦ 226-97	2	新吉洞226-97	朴 元 主
154	♦ 226-77	7	♦ 226-36	6.4	♦ 山86-1	印 泰 倍
155	♦ 226-17	20	♦ 226-87	16	♦ 226-17	權 錄 頤
156	♦ 226-68	30	♦ 226-88	26	♦ 226-68	尹 始 威

0219

157	夕	226-65	50	夕	226-89	6	夕山86-1	李漢廣
158	夕	226-66	59	夕	226-90	15	道林洞	夕
159	夕	226-69	8.1	夕	226-91	1.8	新吉洞223-4	趙廣衡
160	夕	226-19	22	夕	226-92	9	夕	夕
161	夕	226-20	20	夕	226-93	10	夕 226-20	洪承云
162	夕	222	124	夕	222-2	8	夕 274	李鳳秀
163	夕	223-1	44	夕	223-35	31	夕 223-1	金甲洙
164	夕	223-24	3	夕	223-36	2.5	夕 223-24	邊旺成
165	夕	223-24	3	夕	223-37	7	夕 223-25	韓啓善
166	夕	232-1	322	夕	232-63	5	永2卦328	崔相善
167	夕	232-50	237	夕	232-65	8	玉仁洞1-3	安廣洛
168	夕	232-25	70	夕	232-66	6	孝子洞148	林松子
169	夕	232-46	80	夕	232-67	8	永6卦1	尹福根
170	夕	232-42	153	夕	232-68	26	夕	夕
171	夕	233-1	102	田	233-162	38	新吉洞274	金貴任
172	夕	233-147	53	夕	233-163	23	夕	夕
173	夕	233-148	75	夕	233-164	26	夕	夕
174	夕	233-10	45	坐	233-165	20	夕 233	朴昌俊
175	新吉洞233-11	25	夕	233-166	20	夕 233-11	崔又善	
176	夕	234-6	143	夕	234-7	65	五壯洞200-1	趙泰鎬
177	夕	223-32	90	夕	223-38	41	新吉洞87-5	南宮承永
178	夕	223-28	61	夕	223-39	30	夕 223-4	趙度衡
179	夕	223-4	28	夕	223-40	16	夕	夕
180	夕	223-5	40	夕	223-41	25	道林洞山15	金福洙
181	夕	223-6	41	夕	223-42	37	新吉洞山87-8	全永文
182	夕	223-33	27	夕	223-53	0.7	夕	夕
183	夕	209-103	60	夕	209-146	38	道林洞山15	金裕洙
184	夕	223-7	50	夕	223-43	19	新吉洞山89-3	李固誠
185	夕	223-8	45	夕	223-44	26	夕 223	李範鎬

186	♂	223-14	52	♂	223-45	31	阿娘洞361-9	李潤周 外2人
187	♂	223-15	109	♂	223-46	25	堂山洞411-9	李相出
188	♂	223-16	174	♂	223-47	31	永2-1332	尹在倫
189	♂	223-17	119	♂	223-48	25	♂	♂
190	♂	223-18	147	♂	223-49	137	永7-147	朴貞善
191	♂	223-19	45	♂	223-50	28	阿娘洞361-9	李順周
192	♂	223-23	45	♂	223-51	35	永5-12	延天淳
193	♂	223-21	90	♂	223-52	85	♂	♂
194	♂	232-19	77	♂	232-69	46	♂	♂
195	♂	232-39	61	♂	232-70	33	新吉洞232	金貴男
196	♂	232-40	61	♂	232-71	30	♂	朴勝洛
197	♂	232-15	107	♂	232-72	53	♂ 232-15	李敏植
198	♂	232-17	97	♂	232-73	53	♂ 5	許坪
199	♂	233-66	38	♂	233-168	3	♂ 188	趙在龍
200	♂	233-3	541	♂	233-169	78	永6-173	申佑均
201	♂	233-54	146	♂	233-170	29	大方洞210-2	柳光秀
202	♂	233-12	102	♂	233-171	3	新吉洞2-33	朴在根 外4人
203	♂	233-154	57	♂	233-167	0.7	♂	♂
204	♂	234-3	18	♂	234-8	15	♂ 233	康道默
205	♂	234-4	79	♂	234-9	36	♂	蔡正熙
206	♂	235-12	9	♂	235-19	1	永3-1486	金澤萬
207	♂	235-9	62	♂	235-20	17	♂	金澤萬
208	♂	250-1	28	♂	250-4	20	新吉洞250	全昌順
209	♂	250-3	114	♂	250-5	59	♂ 249	金銀鉉
210	♂	249-17	27	♂	249-110	10	♂	♂
211	♂	29-39	40	♂	249-111	3	♂ 249-39	李英子
212	♂	249-45	56	♂	249-103	39	♂ 249	夏涼
213	♂	249-46	42	♂	249-104	35	♂ 249-46	姜得真
214	♂	249-47	24	♂	249-105	22	♂ 249-47	鄭北賢

215	夕	249-35	53	夕	249-106	2	夕	山120	張炳三
216	夕	249-75	6	夕	249-107	0.2	利川郡府長 面櫛保里317	半致奉	
217	夕	249-77	40	夕	249-108	3	"	"	
218	夕	249-36	200	夕	249-109	60	新吉洞232	梁壽烈	
219	夕	254-3	508	夕	254-10	40	夕 254-1	又新劇場	
220	夕	254-4	102	夕	254-11	15	夕 271	南英相伊丙	
221	夕	251-4	194	夕	251-7	37	永5卦306	金演密	
222	夕	252-3	934	夕	252-4	34	"	"	
223	夕	249-37	60	夕	249-112	43	新吉洞249	鄭禮源	
224	夕	221-18	17	夕	221-18	17	夕 山68	金學哲	
225	夕	221-30	2	夕	221-30	2	"	"	
226	夕	220-40	1	夕	220-40	1	"	"	
227	夕	220-38	12	夕	220-38	12	夕 220	申景潤	
228	夕	220-39	10	夕	220-39	10	"	"	
229	夕	220-19	23	夕	220-19	23	"	"	
230	夕	220-17	18	夕	220-17	18	夕 山68	金學哲	
231	夕	220-12	31	夕	220-12	31	夕 220-12	李鉅萬	
232	夕	220-18	75	夕	220-18	75	道林洞26	李鶴秀	
233	永	582-13	17	永	582-13	17		尹京勳	
234	新吉洞	221-32	505	夕	新吉洞221-32	505		鄭奎寅	
235	夕	215-1	1,228	夕	215-1	1,228		李清洙	
236	夕	220-32	20	夕	220-32	20		申景潤	
237	夕	221-18	17	夕	221-18	17		金學哲	
238	夕	224-18	75	夕	224-18	75		李鶴洙	
239	夕	254-5	634	夕	754-5	634		南英相伊丙	
240	夕	254-20	194	道	夕 254-20	194		李漢	
241	夕	249-74	6	笠	夕 249-74	6		辛致奉	
242	夕	253-32	43	夕	253-32	43		金有演	
243	夕	226-18	1	夕	226-18	1		金完植	

考 占 (47)

244	夕	226-75	1	夕	226-75	1		
245	夕	226-16	13	夕	226-16	13		
246	夕	226-76	23	夕	226-76	23	印泰悟	
247	夕	261-2	35	田	261-2	35	申教麗	
248	夕	264-2	47	佐	264-2	47	金博璽	
249	新大方洞	559-2	47	夕	新大方洞	47	李令石	
250	夕	559-8	30	夕	559-8	30	康榮吉	
251	夕	559-3	16	夕	559-3	16		
252	夕	559-9	6	夕	559-9	6	金勝煥	
253	夕	559-10	3	夕	559-10	3	張秉吉	
254	夕	559-7	41	夕	559-7	41	全勝煥	
255	夕	559-5	18	夕	559-5	18	吳在天	
256	夕	559-4	33	夕	559-4	33		
257	夕	585-1	51	夕	585-1	51	張仁杰	
258	夕	588-4	6	夕	588-4	6	孫昌龍	
259	夕	557-25	25	夕	557-25	25	鮮于烏鵲	
260	夕	557-28	15	夕	557-28	15	朴永福	
261	夕	557-29	7	夕	557-29	7	韓光裕	
262	夕	557-30	4	夕	557-30	4	梁台萬	
263	夕	557-4	71	夕	557-4	71	李孟圭	
264	夕	558-8	78	道	558-8	78	金成根	
265	夕	556-4	2,812	笠	556-4	2,812	元善喜	
266	夕	558-11	33	道	558-11	33	金成根	
267	夕	558-13	25	笠	558-13	25		
268	夕	558-7	17	夕	558-7	17	林景益	
269	夕	558-6	27	夕	558-6	27		
270	夕	558-16	25	夕	558-16	25	方子根日	
271	夕	558-2	4	夕	558-3	4	朴玉順	
272	夕	558-9	4	道	558-9	4	金成根	

273	〃	558-10	2	〃	558-10	2	林 强 喆
274	〃	558-14	6	〃	558-14	6	俞 成 根

◎서울특별시광고제55호

서기 1949년 5월 13일 서울시 고시 제34호로써 공고한바 있는 돈암 토지구역
경리지구 제2공구내 환지처를 중 1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변경된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무 4 및 당해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쭉
탐에 공한다

기

종 전 토 지	환 거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동명	지번	지목	면적	동명	지번	지목	면적	동명	지번	지목	면적
돈암	473-10	林野	51.00	三仙洞	268	垈	42.00	三仙洞	268	垈	39.70
	1街		1街					1街			이 종환
〃	473-16	〃	3.00				〃	268-2	〃	2.30	고의승

서기 1967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광고제56호

조리사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7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
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서기 196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시험일시 및 장소

가. 학과시험 : 1967년 5월 19일

나. 실기시험 : 1967년 6월 12일부터 1967년 6월 16일까지

다. 장 소 : 구립조리 기술학교(시내 중구 충무로 3가 E0)

2. 시험과목

공고 (49)

가. 학과시험 : 위생법규, 공중보건학, 영양학, 식품학, 식품위생학
※보건사회부령에 의한 강습을 필한자에 한하여 학과시험을 면제합니다
나. 실기시험 : 한식, 양식, 중국식, 일본식 중 1분야

3. 응시자격

가. 국민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1) 기숙사, 학교,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 또는 공공기관에서 조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기관장이 증명하는 자
- (2) 음식점 영업 중 1일을 통한 1일 평균 100인분 이상의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여관, 호텔, 요리점, 카페 또는 빠---에서 음식을 조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사설의장이 증명하는 자

4. 응시절차

가. 원서접수 기간 및 접수장소

- (1) 1967년 4월 28일부터 1967년 5월 12일까지
- (2)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보건과

나.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소정양식) 1동
- (2) 조리업무 종사자증명(응시원서이면)
- (3)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동
- (4)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장의 진단서 1통
- (5) 사진 (3×4센티 탈모 상반신) 4매
- (6) 수수료(시 수입증거) 200원
- (7) 수료증(강습수료자에 한함)

5.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08:00시까지 학과시험에 필요한 편의구(복, 후

(50) 풍 고

색 불편, 만년필, 연필가 외)와 실기 시험에 필요한 기구(식도, 위생복, 위생모, 행주, 손수건)를 지참하여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나. 수험 개시 시간에 (09.00)시 지참한 자는 수험을 분히합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당시 보건과(22.9067)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57호

1. 건물 표시 : 1) 서대문¹⁾ 현저동 45-46 위복조 35평
2) 성동구 성수동 1가4 위치상복조 15평
3) 용산구 이촌동 303 지상 공동 별소 연화조 콩크리트조
전²⁾ 6평
4) 용산구 용산동 3가11번지 지상연화조 도단층전³⁾ 6평
5) 성동구 신당동 2가 지공중별소 연화조 2.60평
6) 종로구 명륜동 4가 1번지 지상콩크리트⁴⁾ 옥개 3평
7) 성동구 천호동 421번지 세면트도단층 7.52평
8) 중구 정교동 7번지 지상 제1호 부류그조 도단층 2계평
전⁵⁾ 13⁶⁾ 의 2계평 13평
9) 동대문⁷⁾ 승인동 55의2 소재 시립양지회관창고 철거
자재
2. 입찰 일시 : 서기 1967년 4월 28일
3. 입찰 장소 : 당시 재무⁸⁾ 관제과
4. 입찰 방법 : 일 반정쟁입찰
5. 입찰 등록 : 서기 1967년 4월 27일 12시 까지 등록자의 시세, 국세납세
필증을 첨⁹⁾ 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할이상 현금이나 시중 금융기관 보증 수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철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
고 10일 이내에 완전철거하고 정지를 하여야하며 이를 위
약하였을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겠음

서기 1967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58호

내무부고시 제23호(1952년 3월 25일)로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 사업인 필운동—중앙청간 도로화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물을 수용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사명 : 필운동—중앙청간 도로공사

토지 및 지상물의 서목은 별지와 같음

서기 1967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조 서(토지)

순위	소재지	번지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주	소	상	경
1	종로구 내자동	60-1	비	34-8	서종로1-22	이종구	한일은행	조선일보
2	〃	67-3	〃	14	〃	〃	〃	〃

조 서(건물)

순위	소재지	번지	구조	평수	소유자 관계인			
					주	소	상	경
1	종로구 내자동	60-1	목조 화장	11.18	서종로1-22	이종구	한일은행	
2	〃	〃	〃	7.33	〃	〃	〃	
3	〃	67-3	〃	4	〃	〃	〃	
4	〃	60-1	〃	12	〃	〃	〃	
		67-3						

◎서울특별시공고제59호

감사원법 제31조 제4항 및 현상판정 절정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판정문 및 현상명령서를 이에 공시 송달한

0223

(52) 풍 고

서기 1967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공시 송달

→금 鑄百四拾七萬四阡八拾四 1,474,084원

귀하에 대한 벌지 서기 1967년 2월 21일자 감판제 호 감사원판정에 의하여

서기 1967년 5월 20일까지 위 금을 서울특별시에 변상함을 명함

위 기한까지 위의 변상금을 납입하지 아니 할때에는 감사원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징수법 중 채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함

서기 1967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최 병 두 귀하

1967년 감판제 46호

완 강

서울특별시 구로동 주택관리 사무소

분임수임원

지방행정주사보 최 병 두(현퇴직)

위의 자에 대한 서기 1965년 11 및 서기 1966년도 서울특별시 소관 주택비 특별회계 세입금 횡령사건을 경사하고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위의 자는 서울특별시에 대금 약 1,474,084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이 유

위의 자는 서기 1965년 8월 15일부터 서기 1966년 10월 20일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구로동 주택관리 사무소 분임수임원의 직위에 있던 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기 1965년 10월 20일부터 서기 1966년 10월 20일까지 사이에 그 취급에 속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광명주택 년부상황금 1,044,624원 동 간이주택 년부상환금 429,460원 계 1,474,084원을 수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세이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횡령비 소하여 동 단체에 손해를 끼쳤다

0224

이는 서기 1966년 12월 8일자 서기감 200-2.502호와 동년 12월 29일자 서도주 822-2-4502호 및 서기 1967년 1월 13일자 서도주 822-2-113호로 당월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장의 범죄발생 통보 및 관계증서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살피건대 위의자는 본임수입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주자로부터 수납한 주택년부상관금을 횡령하여 동 단체에 손해를 가친 것으로 허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친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 처벌이 있다고 인정하고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선정한다.

서기 1967년 2월 21일

감 사 원

현상명령서

一금 九萬參阡四원 93,004원정

귀하에 대한 벌지 서기 1967년 2월 21일자 감판서 호 감사원 판정에 따라
여 서기 1967년 5월 30일까지 위수은 서울특별시에 배상한을 것임

위 기간까지 위의 배상금을 납입하지 아니 한때에는 감사원법 제4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중 해당 부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한

서기 1967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한종호 귀하

서기 1967 강판제 47호

판 정

서울특별시 구로동 주택관리사무소

본임수입원의 보조자

외무원(고용원) 한 종 호(현퇴직)

위의 자에 대한 서기 1967년도 서울특별시 소관 주택비특별회계 세입금 첫회
사전을 검사하고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주 문

(54) 공고

위의 자는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93,004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이 유

위의 자는 서기 1964년 10월 1일부터 서기 1966년 9월 30일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구로동 주택관리사무소 주택년부상환금 정수 외무원으로서 분임수임원의 사무를 보조하던 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을 기화로 서기 1966년 3월 3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사이에 그 취급에 속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공영주택 년부상환금 62,499원 등 잔이주택 년부상환금 30,505원 계 93,004원을 수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세임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횡령비소하여 동단체에 손해를 끼쳤다

이는 서기 1966년 12월 8일자 서기감 200—2502호와 동년 12월 29일자 서도주 822.2—4502호 및 서기 1967년 1월 13일자 서도주 822.2—113호로 당원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장의 범죄발생 통보 및 관계증서 거류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살피건대 위의자는 분임수임원의 보조자로 있으면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입주자로부터 정수한 소택년부 상환금을 횡령하여 동 단체에 손해를 끼친 것임으로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서기 1967년 2월 21일

감사원

◎서울특별시공고제60호

1. 입찰 등록 : 서기 1967년 5월 5일 18:00시까지 일찰등록서에 국세 세제납세부증을 첨부하여 도시계획국 서무과에 접수시키기 바랍니다.
2. 입찰 일시 : 가. 뚝도, 면목지구 서기 1967년 5월 8일 10:00
나. 성선, 문광, 수류지구 서기 1967년 5월 9일 10:00
3. 입찰 장소 : 도시계획국 서무과

0825

4.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할 이상의 현금 또는 시중은행 보증수표를 입찰시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배제계약체결 및 예금납부방법

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조증금으로 배제합니다.

나. 낙찰자는 입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배제계약을 체결하고 낙찰액에서 3할 해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토지대금으로 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거상물의 철거, 보상, 명도에 관하여는 혜도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다 상세한 사람은 당시 도시계획국 서무과에 문의하십시오.

서기 1967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 친 육

◎서울특별시공고제61호

건설부고시 제2494호(1966년 6월 22일)로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사업인 청량리 제1우고 가설공사 구역내에 현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사명 : 청량리 제1우고 기설공사

2.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별지 조서와 같음)

서기 196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김 친 육

토 지 조 서

번호	소재지		지적주	소유자		간접주인	소유권자	
	동명	지번		도	정		성명	면적
1	회기동	92-12	番	33.0	회기동 92-12	鄭 勝 錄		
2	〃	92-13	番	11.0	〃 92-13	孫 淳 利		
3	〃	92-32	番	51.0	〃	〃		
4	〃	92-33	番	7.0	〃 92-11	李 輝 明		
5	〃	92-15	番	13.0	〃 92-15	龐 爰 己		

(5 6) 공 고

6	회기동	99-40	예	9.0	회기동 66	제 단체 인 계 7일 축식 일 예수재림교 제 단	한국인 합회부 회원
7	〃	99-17	〃	21.0	〃 99-17	崔 正 夏	
8	〃	99-35	〃	1.0	〃 99-18	金 柄 周	
9	〃	99-33	〃	22.0	한강로1가 245-3	柳 翊 子	
10	〃	99-36	〃	0.5	회기동 99-20	趙 葉 一	
11	〃	99-21	〃	35.0	목동 298-1	金 東 淳	회기동 99-8 金 成 玉
12	〃	99-32	〃	0.9	회기동 99-7	沈 正 泽	예고등기 (동기임) 소청부
	계			204.4			

전 물 조 서

연 번	소 제 지		구 주	주 소	소 유 자		판 지 인	소유자이 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동명	지번			주	소	성	명
1	회기동	92-15	목조와습	3.00	회기동 92-15	魏愛己		
2	〃	92-13	서예부로 목조와습	10.56	〃 92-13	孫沐弼		
3	〃	〃	〃	8.69	〃	〃		
4	〃	92-12	목조와습	5.76	〃 92-12	鄭景姫		
5	〃	〃	목조세례 와습	11.66	〃	〃		
6	〃	99-17	목조와습	9.47	〃 99-17	金英子	99	王久子 가암부
7	〃	99-21	〃	14.20	목동 298-1	金東淳	99-8 金成玉	예고등기
8	〃	99-13	〃	14.41	한강로1가 245-3	柳熙子		
	계			107.75				

◎ 서울특별시공고제62호

서울특별시 각종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실시 공고

1. 시험실시 구분

시험면허종별	원서접수기간	학과시험일자	장소	비고
보통제 1종	5.13~5.18	5.20 14:00	한국시립경찰학교 서울시 공무원교육 원	1 차

0226

용 고 (57)

보통제 2종	5.19~5.25	5.27 14:00	부허시험장 및 서울 시 공무원교육처	1 차
보통제 2종	6.10~6.15	6.17 14:00	〃	2 차
보통제 1종	6.17~6.22	6.24 14:00	〃	2 차
소청 및 특수	6.23~6.29	7. 1 14:00	〃	특수민원자는 2 문자에 한함

가. 학파시험 접격자 발표일자는 학파시험장에서 알림
 나. 학파시험 접격자의 기능시험일자는 학파시험 담격자 발표시에 지정
 받으십시오.

2. 시험과목

가. 필기시험

1) 교통관계법령 2) 구조 및 쇄골방법

나. 기능시험

1) 저작반응검사 2) 코ース 및 장거리

3. 응시자격

가. 도로교통법 제57호(면허시험접격자유)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나. 보통제2종 및 특수(2종) 면허응시자는 서기 1949년도 출생자로서
 학파시험 실시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다. 보통제1종 응시자는 서기 1942년도 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출생일이
 학파시험 실시일 이전이어야 하고 보통제2종 면허를 받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자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매 (이면 신체검사란에 등록 소재 국립 경찰병원기 신체검
 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민등록의 초본 1매
 다. 시험면제 자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에 따른 증명서
 라. 사진 2매 (3개월 이내에 찬영한 반당합판)
 마. 보통제1종 면허 응시자는 3년 이상의 운전경력 증명서 1부(시·도지
 사 발행)

바. 수수료 300원(서울특별시 수입증지)

5. 용산구 한남동 소재 운전 면허 시험장

6. 기 타

가. 평기시험 도구는 정색 칭크나 불필을 사용하십시오

나. 이후 각종 면허시험은 계속 실시 하니 상세한 사항은 경찰국 교통과
또는 각 경찰서 교통계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67년 4월 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서울특별시공고제63호

중앙시법 종합시장 및 중앙아파—트 전립 및 운영적격자모집 공고
당시 서대문구 학동 11-174번지 일대 약 2,000평에 중앙시법종합시장 및 중
앙아파—트를 전립하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응모자격

가. 공익을 위하여 당시가 지정하는 시장 및 아파—트를 전립하고 동시에
설을 경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그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자

나. 건축공사비의 일부 및 건축 설계비로서 금 54,550,000원정을 당시
에 예치시킨자

2. 응모절차

가. 전항 나호의 예치금을 당시 산업국 상무과 본임세입세출의 현금 출
납원 계좌에 입금한 중[]서를 제출할 것

나. 당시가 지정하는 응모원서를 제출한 자

다. 전기 1항의 응모자격 및 2항 가호 및 나호의 서류는 필히 당시 산업
국 상무과에 문의하여 노진의 양식과 예치금의 조건 등을 지실했 후 첨
수시키기 바랍니다

3. 전립적격자 결정방법

당시의 「중앙시법 종합시[] 및 중앙아파—트 전립적격자 선정위원회」에
서 결정합니다

4. 응모원서 접수처

산업국 상무과

5. 응모마감일

서기 1967년 5월 6일까지

6. 기타

시장 및 아파트의 건립규모에 관하여는 당시 건설국 영선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67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강·경·현·속

◎서울특별시공고제6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성신도지구지정리지구 제3동구내 환지 예정지 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세정지를 변경 지정하고 관계조서 및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서대문구청 및 마포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종합에 충합합니다.

서기 1967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강·경·현·속

예 규

◎서울특별시예규제748호

서기 1967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강·경·현·속

제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권등의 내부위임

1.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의 서면에 의한 제고와 경우에 따른 충고 제1항 규정의 결정권·등조 제4항의 보장요구권 등 제6조의 청어를 지정한 관직에게 있는바 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원활의 속도 및 자기 때문에 배운 책

- 심의 기회 부여를 회칙으로 서기 1967년 4월 10일부터 규칙에게 위희경
정권 보정요구권 및 연기통지권을 내부위임하니 위임 목적에 위폐화기
나 처리에 차오없이 할것
2. 출장소분은 내부위임에 의한 결정 또는 연기통지를 함께 있어서는 반
드시 예전마다 사건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지방세법 제58조 규정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무총리가 행할 것
이나 그 결정에 앞서 본적이 예비심사를 행할 것이니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의 처리는 중결의 예에 의할것
 4. 본적의 직인을 사건에 암날한 결정서 등 용지를 금번에 한하여 세정파
에서 별지와 같이 배부하니 구청장의 영수증을 지참하여 서기 1967년 4
월 12일한 수령로록 조치할 것이며 이후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인의 사건암날 신청을 할것
 5. 금번에 배부하는 청정서등과 이후 신청에 의하여 직인을 암날할 결정
서 등은 각구 부과과·와 징수과의 주무계장(출장소는 부과계장 또는 세
무계장)이 관리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불부를 비치하여 수불상황과
책임의 소재를 당시 명확히 할것
(첨부물 외계자는 제 탁함)